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5<sup>th</sup> April 2013

- ▶ WHERE IS GRACE CHANG?:  
100 - 1 = 0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세수확충을 위한 관세정책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  
..... 3
- ▶ FTA NEWS:  
한-미 FTA 시행 성과 및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 4
- ▶ VOICES FROM THE FIELDS:  
신속통관제도와 CHECK POINT  
..... 5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6
- ▶ CUSTOMS PRECEDENT ㉔  
..... 7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100 - 1 = 0



장승희  
대표 관세사

백에서 일을 빼면 구십구가 아닌 영이라 합니다. 구십구 번을 잘 해도 한번을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잘 한다 해도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한가지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信不足 有不信焉(신부족 유불신언)이라 하였습니다. 믿음(信)이 부족하면 불신(不信)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이라 합니다. 믿음이 1%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음(불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과 능력과 지식 등 세상의 많은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한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초가 없이 세워진 집처럼 한번의 광풍에도 와르르 무너져 無 (nothingness)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그 한가지는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이번달 cover story 는 새 정부 들어 바뀌어진 관세정책과 그 대비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FTA News 는 시행 1 주년을 맞은 한-미 FTA 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신속통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지런한 한국인의 특성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수출입통관제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에 유례없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신속한 통관을 원하시는 고객을 위한 제도가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관세무역관련 법령 소식과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분석도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은 지난달 창립 48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65 년 설립되어 반세기동안 꾸준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신한을 신뢰하여 주시고 신한의 서비스에 만족하신 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 년 후의 신한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99 번을 잘 하여도 한번을 잘못하면 잘못된 것이 된다는 원리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9 가지를 잘 하여도 한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Teamwork, Innovation, Passion, Integrity 의 경영이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네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없으면 영이 되는 한가지는 Integrity 즉, 성실과 정직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반드시 드려야 할 한가지 입니다.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4 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세수확충을 위한 관세정책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



성기창 관세사  
(kcsu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인천공항 지사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전담

FTA News-

한-미 FTA 시행 성과 및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최성지 관세사  
(s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전문 관세사

Voices From The Fields-

신속통관제도와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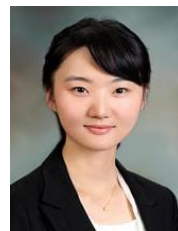
이완희 관세사  
(w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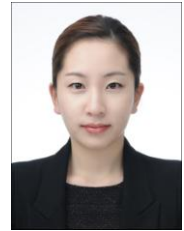
임보화 관세사  
(bhlh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28 기 관세사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Customs Precedent ㉔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최지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 세수확충을 위한 관세정책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

EU, 미국 등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은 증가했으나, 관세액은 감소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안정적인 세수입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맞추어 관세청은 관세포탈 및 부정환급 10 대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수입원재료 과다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입안 예고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세수확충을 위하여 달라지고 있는 관세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EU, 미국을 비롯한 7 개의 FTA 발효 이후 교역 증가에는 도움이 됐지만 나라 곳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FTA 체결국의 수입물품 대부분에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관세액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은 9 조 8 천 157 억원으로 전년(10 조 9 천 901 억원)보다 10.7%가량 줄었다. 2005 년 이래 7 년만의 감소이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 관세청은 연초 기업 조사를 확대하여 지하 경제를 양성화 시키겠다는 정책 발표에 이어 관세 포탈 및 부정환급 10 대 고위험군을 선정 하였으며 「수입 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입안 예고 하였다.

## 1. 관세포탈 및 부정환급 10 대 고위험군 선정

관세청은 새정부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국민건강 안전보호 등 국정 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밀수입, 부정수입, 관세포탈, FTA 등 특혜관세 위반, 원산지표시 등 위반, 마약 밀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상표권 침해, 밀수출, 부정환급** 등 10 대 고위험군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중점관리를 통해 세수탈루와 부정무역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관세국경관리 전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과 단속을 펼치게 된다.

## 2.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보다 관세 등 환급 시 과다환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입 시점 별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볼베어링 등 68 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2 년의 기간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단축되었다. 셋째, 같은 품목에 여러 세율을 적용해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원유 등 12 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제한하고, 전년도 세율별로 수입한 비중만큼 세율별로 환급사용물량을 안분해 수입원재료의 평균세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FTA 이외의 환율, 국제유가, 할당 관세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반영해 실제 징수한 관세액을 수입액으로 나는 실효(실행)관세율 역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새정부 출범 이후 줄어든 세수 확보를 위해 관세청 및 각



세관의 집중 단속이 지속 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들은 10 대 고위험군에 대비하여 수입물품들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이며, 환급 고시 시행에 대비하여 고시에서 열거하는 과다환급 우려 품목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환급 신청 시 부당하게 과다 환급을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성기창

[kcsung@customsservice.co.kr](mailto:kcsung@customsservice.co.kr)

# 한-미 FTA 시행 성과 및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행 1 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관세청은 원산지 허위기재 등 FTA 를 이용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 및 관련업계는 원산지 사후검증 시스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 FTA 시행 성과 및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에 대한 소개는 하기와 같다.

## 1. 한-미 FTA 시행 성과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對美) 수출 증가**  
한-미 FTA 가 발효된 2012 년 3 월 이후 지난 1 년 간('12 년 3 월 ~ '13 년 2 월)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3% 증가하였고, 수입은 8.9% 감소하였으며,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무역수지는 49 억 달러 증가한 약 165 억 7 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한-미 FTA 발효후('12.3~'13.2월) 對美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11.3~'12.2월		'12.3~'13.2월		FTA 이후 '12.3.15~'13.2.28일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580.0	587.7	1.3	570	1.4	
수입	463.2	421.9	-8.9	399	-9.1%	
무역수지	116.7	165.7	49억 달러(42.0%)	172	39.1%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부처 협동, 관세청

세부 산업별로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일반 기계, 신발, 섬유, 농수산물 분야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미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예컨대,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부품의 관세 2.5%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운데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5%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진출 자동차 업계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對韓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2011년	2012년	FTA 발효 이후 '12.3~'12월	
			금액(억 달러)	증가율(%)
FTA 수혜품목	30.6	38.1	32.7	25.5
FTA 비수혜품목	0.4	0.4	0.3	-6.9
자동차부품 전체	31.0	38.5	33.0	25.0

자료: 한국무역협회, US ITC

##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한-미 FTA 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작용하여 '12 년 2~4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70.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FTA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일본 등으로부터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 '12 년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162 억 6 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미국의 분기별 對韓 투자 동향〉



자료: 지식경제부

〈미국의 최근 對韓 투자〉

연도	(단위: 억 달러, %)		
	미국의 對韓 투자	증가율	세계계 대비 비중
2008	13.3	-43.0	11.3
2009	14.9	11.9	12.9
2010	19.7	32.8	15.1
2011	23.7	20.1	17.3
2012	36.7	54.9	22.6

## 2. 한-미 FTA 원산지 검증 개요

### -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개요

FTA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원산지 검증 방법은 검증수행의 주체를 기준으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은 직접검증의 대표적 사례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 -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절차

검증절차는 대체로 검증대상의 선별, 서류 검증, 현장검증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세부 검증절차는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 및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중 관할세관에서 수행하는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은 FTA 특혜관세 신청과 동시에 검증이 함께 진행된다. 본 검증은 수입통관지 관할세관의 사후 심사 팀이 수행한다. 검증대상의 선정 후, 1 차 서류심사에서는 원산지 증명서(EX.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CBP Form 28]를 요구하며 본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2 차 서류심사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조사결과, 원산지가 적정하게 관리되어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선으로 그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나,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이행통지서(CBP Form 29)를 발송하여 예비결정 또는 최종결정을 통보한다.

특정 회사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은 미국 관세청에서 진행하며, 검증대상 선정 후 수출자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현장검증 후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 징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동일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중지, 추가정보 제공기회 부여(한-미 FTA 제 6.18 조 제 3,4,5,6 호)와 추정, 과태료 부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 3.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대응전략

수출자 유의사항	수입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 증빙관련 서류의 보관 (5년) 및 철저한 관리</li> <li>·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기준 사항 점검</li> <li>·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li> <li>·협력업체 관리</li> <li>·원산지 증명서 상 서명 필수</li> <li>·수출입 계약서에 귀책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자의 자료보관 의무 준수</li> <li>·현지 수출자 및 생산자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설정</li> <li>·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li> </ul>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행 2 년 차인 올해부터 미국 관세청은 원산지 사후검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혜택을 받은 기업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구비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성 지  
([sjchoi@customsservice.co.kr](mailto:sjchoi@customsservice.co.kr))

# 신속통관제도와 CHECK POINT

신속통관제도는 장시간의 관세행정으로 인해 물품이 오랜 시간 묶여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물품이 보세구역 도착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관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통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전에 인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을 대비하도록 하자.

## 1. 편리한 신속통관

주문한 물품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은 택배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주의 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신속통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가 그것이다.

## 2. 신속통관 제도

### (1)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신속통관을 위하여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되기 이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입항전 수입신고하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항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물품의 신속한 반출이 진행 된다.

### (2)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원칙상 그 신고가 수리 되어야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도는 그 원칙의 특례에 해당 하는 제도로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담보를 제공(담보 생략 가능)하고 물품을 우선적으로 반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시간의 관세행정(세율 결정, 사전 세액 심사 등)으로 인해 물품이 오랜기간 보세구역에 묶여 있는 것을 방지하여 신속 통관을 도모 한다.

### (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제도는 선박, 항공기에서 적재된 물품이 양하되어 보세구역에 운반하는 도중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수입신고 준비는 모두 끝났으나 보세구역에 도착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물품이 보세구역 도착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한 물품 반출이 가능해진다.

## 3. 신속통관을 위한 체크포인트

### (1) 신고오류 사례

물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신속통관을 위하여 빠르지만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신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오류 사례는 HS CODE 일 것이다. 가령 카메라를 수입하는 경우 그 기능에 따라서 HS CODE 가 다르고, 세율도 상이하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8525.80.2090 에 분류 될 수 있으며 WTO 협정세율은 0%이다. 반면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경우 9006.40.1000 에 분류 될 수 있으며 **기본세율은 8%**이다. 같은 카메라일지라도 기능에 따라 세율이 8%나 차이를 보이니 물품의 폴라로이드 기능을 누락하고 신고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 신고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2) 신고오류의 제재

전술한 바와 같이 잘못된 HS CODE 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를 받을 수 있다.

첫째,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류사례에서와 같이 저세율로 신고하여 고세율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세액의 납부는 물론이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오류점수의 증가이다. 오류점수는 신고 오류(정정, 취하 등) 발생시 산출되는 점수이다. HS CODE 오류 등으로 인하여 신고 정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높아지고, 일정점수에 달하는 경우 P/L 신고 정지, 검사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위와 같은 신속통관제도는 정확한 신고가 수반되어야 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완 희

[whlee@customsservice.co.kr](mailto:whlee@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되는 물품의 공급자가 합병으로 인해 공급자 명칭 및 물품의 규격기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의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Nippon Yakin Kogyo Co., Ltd 에서 공급하는 공급자 기호 NAS 800[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 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 라 한다)의 NCF 800 에 해당한다] 강종(鋼種) 인 것  
 ○ JIS 의 SUS 410 강종인 것  
 ○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이하 "ASTM" 이 라 한다)의 410S 또는 JIS 의 SUS 410S 강종인 것  
 ○ JIS 의 SUS 329J4L(공급자 기호 NAS 64 를 포함 한다) 강종인 것  
 ○ ASTM 의 S 32750(공급자 기호 NAS 74N 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800H(JIS 의 NCF 800H 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255(JIS 의 SUS 890L 에 해당 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185N(JIS 의 SUS 312L 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800T[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통일규격부여시스템(Unified Numbering System, 이하 "UNS No."라 한다)의 N

08811 에 해 당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254NM(UNS No. N 08367 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255NM(UNS No. N 08926 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 공급자 기호 NAS 75N(UNS No. S 32760 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 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의 고유 강종(NSSC 409L)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목 내지 사목 생략)  
 ○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의 고유강종(NSSMC-NAR-SN-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목 내지 자목 생략)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일부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품목	변경 전 품목분류	변경 후 품목분류
Network Camera;SNC-M300 등 29 건	제 8525.80-2010 호 또는 제 8525.80-3000 호	제 8525.80-1020 호
Demux-mux Module ; DWDM2HM14NOA01-03, 02-03	제 9013.80-9000 호	제 8517.70-3032 호
β-Cyclodextrin	제 3913.90-9090 호	제 2940.00-1090 호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등 2 건	제 9030.33-9000 호	제 9027.80-1000 호
Meat of Swine; frozen;; France 등 3 건	제 0203.29-9000 호	제 0206.49-1000 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사유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2.10.31) 사항 반영 및 원산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 사항 수용

2. 주요개정내용

1)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추가 및 표시방법 변경

- ① 관세통계통합분류표 개정으로 추가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 반영
  - HS 0308 호(수생무척추동물): 소매포장, 수족관등에 표시
  - HS 3826 호(바이오디젤) : 소매용, 포장상자·용기 등에 표시
  - HS 9619 호(위생용품) : 소매포장에 표시
-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철강류(3개) 표시방법 반영
  - HS 7208(열연강판 및 후판)
  - HS 7210(평판압연제품 - 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 강판에 한함)
  - HS 7219(스테인리스강판)

현품에 원산지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철강판재류로 두께 10 mm 미만)  
 ③ 물품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표시방법 추가 및 변경  
 ○ 유모차 8715  
 [개정전] 내용없음  
 [개정후] 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개정사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방법 구체화  
 ○ 골프채 9506  
 [개정전] Head made in 국명, Shaft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개정후] Head 국명, Shaft 국명, Assembled in 국명  
 [개정사유] 'made in' 표시가 생략되어도 원산지 인지 (원산지 표시면 제한)

2) 원산지 표시기준 명확화

(1)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 현품이나 소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여

포장상태에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확화 (고시 제 3-1 조 제 4 항)

3) 과징금 부과절차 간소화 등

- ①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과징금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교부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 (「행정절차 법시행령」 제 14 조 의견청취 생략 가능 예외규정 반영) (고시 제 6-6 조제 2 항 단서 신설)
- ② 의견진술 포기서(별지 제 17 호 서식) 신설

3. 시행일자

2013. 3. 20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하

(bhlm@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㉔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 관 0123\_2012.07.12)

로 표시된다.

## □ 청구법인 주장

### 1. 구매대리계약

- (1) S와 B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에게 구매에 필요한 정보제공
  - 나. 청구법인이 최종 구매결정한 물품의 단순한 구매대행
  - 다. 물품의 인도과정에 무관여
  - 라. 소유권을 미보유 한다.
  - 마. S는 구매대리용역의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

### (2) S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 가.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령 후 선적
-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S가 아니라 물품의 생산자("M")이다, 즉, S는 단순히 B의 구매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구매대리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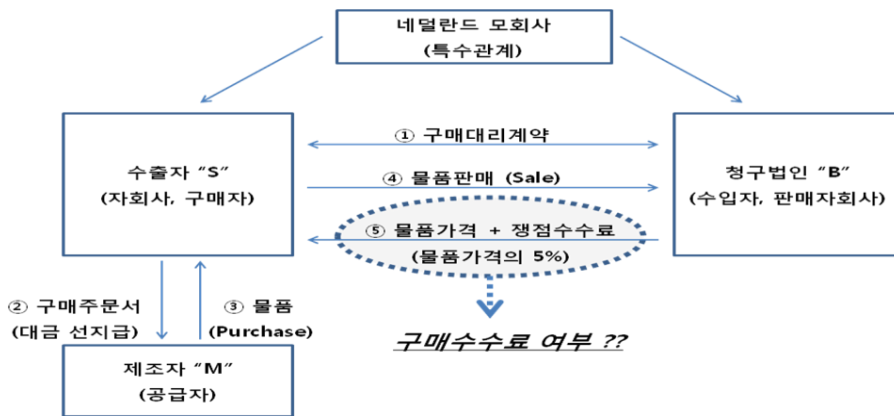
### 2. 대법원 판결

- 대법원에서도 본 건과 동일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판결)
-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 처분청 의견

### 1. S의 역할

- (1) S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사의 역할
  - 가. 물품의 생산과 물류에 관한 총괄적 업무 수행
  - 나.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판매자의 역할



## □ 사실관계

- ① 청구법인 "B"는 홍콩 소재 수출자 "S"에 구매주문을 함
- ② S는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쟁점물품의 제조자 "M"과 신용장 또는 전신환송금(T/T)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선지급함
- ③ 제조자(공급자)와 수출자(구매자)는 쟁점물품의 구매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공급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Purchase)함
- ④ S는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을 B에 판매(Sale)함
- ⑤ B는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 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지급함

## □ 쟁점

B가 S에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 □ 관련법령

-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 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중략)

-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제1항
  -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거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 ①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 3.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 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for the account of a buyer)**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며,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커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

수행

(2) S는 B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구매수수료가 아닌 타 항목으로 인식함 (B가 제출한 자료에 의함)

### 2. 구매대리계약

B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논의과정 중, S와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키로 함

이는 구매수수료로 과세가격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의심 가능

### 3. 대법원 판결

B가 주장하는 판결사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함

조세심판원은 본 건과 동일한 사안의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 조세심판원 의견

#### 1. 거래관계도 검토

(1) S는 공급자(제조사 "M")로부터 물품을

구매(Purchase)하여 B에 재판매(Sale)함

(2) S와 M의 구매주문서에는 M은 해외 제조자로, S는 구매자로 기재됨

(3) S가 물품대금을 M에 선지급하고 B가 사후에 송금하고 있음

(4) S의 2009년 재무제표에 해당 쟁점수수료는 매입채무 부분 및 크레임 총당금으로 기술되어 있음

(5) S와 M간의 표준계약서(정형구매조건)에 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은 일정 조건과 합의된 인도에 따라 구매자(S)에게 이전됨을 기술함

#### 2. 구매대리계약 검토

(1) S와 B간에 체결한 구 계약서에는 B에게 물품을 재판매하기 이전에 S가 순간적인 소유권(flash title)을 보유한다고 기술함

(2) 쟁점물품의 다양한 구매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3) B의 회계자료에 S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함

S는 B를 포함한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음

해당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음

### □ 검토의견

이 건 심판 결정은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 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계약서 상의 형식적 내용 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중요시 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 수행하는 청구법인을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현재 구매수수료 관련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 거래관계보다 형식적 내용을 중요시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여야 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